제1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7. 8.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7월 8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원장 손 병 두 부위원장 이 성 위 원 호 최 훈 위 원 윤 석 헌 원 위 윤 면 식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0년도 제12차 금융위 회의록, 제4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3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0년도 제12차 금융위 회의록, 제4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3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차기 회의에 보고
 -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29호 『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라이나생명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기한보다 지체하여 지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23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
 - (위원) 고난도상품의 정의와 관련해서 나중에 규정을 만들겠지만 20% 부분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시장상황에 따라서 상품의 손익은 결정되 겠지만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 20%를 넘게 되는 상품들 을 사전적으로 선별할 수 있음. 그런 상품들이 고난도금융 투자상품 규제를 적용받게 됨. 그런데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에 고난도상품판 정위원회를 두도록 할 예정이고 관련 규정도 곧 고시할 예 정임.
 - (위원) 이 시행령 개정안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음. 작년 말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 관련 내용이고, 그동안 금융위에 상정되었던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제재근거가 명확 하지 않아서 법규 적용에 애로를 겪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 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도 그렇고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의 경우도 그렇다 고 보이는데, 최근에 금융위에서 다루었던 안건 중에서 이 렇게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어떤 변 화가 있을 수 있는지,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명확

히 함으로써 앞으로는 좀 더 법규적용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OEM펀드 관련된 내용과 동일증권 판단기준이 중 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음. 최근에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이 시리즈펀드를 설정하고 농협은행㈜이 OEM펀드 관련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요건을 의결 해 주셨음. 이 건에 있어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 산운용㈜에 대해서는 OEM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했 지만 현재까지는 판매사에 대해서는 제재근거가 없기 때문 에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못했음. 이 부분이 앞으로는 펀드판매사에 대해서 OEM펀드 관련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될 예정임. 또한, 동일증권 판단 기준은 '미래에셋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8년 5월에 도입된 조항임. 공모규제 회피 우려가 있는 사모펀드들이 우후죽순으로 설정되고 있고,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음. 지난 12월에 발표한 DLF종합대책에서는 공모규제회 피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동 조항을 구체화하고 기존 사례에 대해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음. 이번 개정안에서는 증권을 발행 하는 일반회사 입장이 아니라 금융투자목적의 펀드설정이나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모집에 대해서 공모판단기준 을 명확히 하는 것임. 따라서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의 유사성' 이런 문구가 포함되었음. 나아가서 이러한 펀드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부분도 명확히 했음. DLF대책을 만들면서 금

감원과 협의할 때 판매사가 여러 운용사를 동원해서 펀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증권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도 반영을 한 것임. 최근에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건은 공모규제회피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모규제를 회피한 법령위반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부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상품들을 묶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되었기 때문에 공모규제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위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와 관련 해서 최소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는 상황인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개인투자자의투자금액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지?
- (보고자) DLF대책을 하면서 업계와 협의할 때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 할 때 1억 원 기준으로 마련하게끔 하는 것과 3억 원 기준으로 마련하게끔 하는 것은 큰 차이인 것을 느낄 수 있었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31호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32호 『케이알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33호 『브이아이금융투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34호 『교보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35호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5개 증권회사가 거래규모 등에 연동 하여 비금융 투자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위반건수에서 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한 사례인지?
- (위원) 위반건수 산정기준에 있어서 1년을 1건으로 하고 지급단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횟수를 위반건수에 추가하자는 것으로 증선위에서 수정의결된 사례임.
- (위원) 그렇다면 증선위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 (위원) 동의함.
- (위원)「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동일성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건수를 재산정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50% 감경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이베스트투자증권㈜ 5억 6,000만 원, 케이알투자증권㈜ 1억 9,000만 원, 브이아이금융투자㈜ 2억 7,000만 원, 교보증권㈜ 1,870만 원, 유안타증권㈜ 1억 6,0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겠음.

- ㅇ 각각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수정*의결함
 -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236호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37호 **『한국산업은행의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 제한 예외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한국산업은행이 SPV를 100% 자회사로 설립하게 됨에 따라 주식취득제한 예외를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최근 회사채·CP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아직 비우량물에 대해서는 신용경계감이 남아 있지만 4월 이후 상당부분 개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된 것도 요인이지만, 관계기관 합동으로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을 발표하면서 announcement effect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모여 회사채·CP시장이 안정화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더욱 개선되길 바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의결안건 제238호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하나금융지주가 고객정보 공유시 고객정보관리인의 점검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3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시 동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신용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제한 하는 내용
 - (위원) 카드사가 어떤 회원에 대해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도한 경 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말라고 하면 풍선효과처럼 다른 이익을 제공하게 되지 않을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풍선처럼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음.
 - ㅇ (보고자) 카드사의 경제적 이익제공은 규정에서 경제적 이익

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를테면 부가서비스라는 것은 카드사의 포인트, 캐시백, 할인, 무이자 할부 이런 것들이고, 또 법인회원한테 주는 경제적 이익이 회사의 기금에 출연한다든가 아니면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든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든가 해외 연수를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음. 그런 모든 것들을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카드회원에 대해 제공하는 이익을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풍선효과는 없게 됨. 다만, 이런 경제적 이익 제공 대신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위원) 만약 소비자가 카드를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카드가 소멸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물론 카드사가 리텐션 마케팅(retention marketing)을 하기는 함. 그런데 법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유효기간 끝나면 종료되어서 신규카드 발급을 원하는 회원들은 새롭게 신규발급 받아야 되는 상황임.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위원) 그러니까 개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소멸이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인지?
- (보고자) 그 부분은 소비자의 선택임.

- (위원) 특정한 지급결제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 도한 이익을 주면 결국 이 카드사의 이익이 가맹점의 수수 료라든지, 아니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연회비라든지, 어떤 비용에 의해서 충당되는데 그것이 약간 역진적으로 재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카드를 많이 결제하는 사람들은 부가 그만큼 있고 쓸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면 다른 참가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임. 카드가 거의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결제수단으로 쓰고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급결제수단인데, 많이 쓰는 사람한테 개인회원 중에서도 많이 쓰는 사람, 법인회원은 당연히 개인회원보다 구조상 더 많이 씀. 이런 사람들한테 경제적 이익을 돌려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부담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싶음.
- (보고자) 지금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제한 도 기본적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에 근 거하고 있음. 법인회원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으로부터 받은 수익이 연회비 수입에 비해 제공하는 경제적이익이 30배 정도 넘음. 반면 개인회원에 대한 연회비 수입의 의 6배 정도 되는데 개인회원은 사실 카드론을 통해서 금융, 대출 이런 쪽도 활용하기 때문에 카드사한테는 또 다른수익원이 되고 있지만 법인 회원에 대해서는 이런 론(loan)을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자기가 지출하는 비용과의 매칭부분에 있어서 법인회원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임.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일맥상통

하는데 그런 차원을 고려해서 개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금액으로는 훨씬 크지만 그런 수익자부담비용 원칙에 따르면 법인회원에 대한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또 법인회원은 소수의 대형 법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형평성문제도 있어 금번에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은 제한하기로 했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40호 『(경기)안국저축은행 前 ㅇㅇㅇ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경기)안국저축은행 前 ○○○에게 지난 4월 금융위 의결로 부과한 제재조치를 취소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41호 『(서울)유진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서울)유진저축은행이 미인가로 지점 등을 설치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선임사유를 공시할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와 임직원 신분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의결안건 제242호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이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이 건도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 의무를 위반했고 앞의 안건도 그러함.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저축은행이 많고 규모가 작아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 금감원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나 유의사항을 공문 으로 안내하면 다음에 이런 안건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음.
 - (보고자) 저축은행중앙회와 정기적인 파트너십 미팅을 하고 있음. 그래서 감독상의 유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전파해서 내용을 몰라서 제재를 당하는 불 이익이 없도록 수시로 소통하고 있음.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서 각 저축은행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지하도록 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의결안건 제243호 『㈜우리은행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금융보안사고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건에 대해 제재 자체뿐만 아니라 제재의 근거가 되었던 사항 중 하나가 추 가되어 처음으로 선관주의까지 제재사유가 추가된 사안임. 그래서 금융보안 쪽에 대해서 규제와 제재 체계에 좀 미흡 한 점들이 발견되어 말씀드림.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감독규 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면 법부터 규정에 이르기까지 안 전성 확보의무를 금융회사에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 에 따른 기준들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임. 그래서 이번 제재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책임을 묻는 형태의 법적용이 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음. 법령부터 감독기준 에 이르기까지 어떤 절차와 어떤 물적·인적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관리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하느냐, 또 기술적으로 어떻 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들이 미진한 측면이 있었음. "일단, 알아서 금융회사에서 열 심히 해라. 그런데 문제가 나면 나중에 제재하겠다."는 식의

시스템이라서 사실 금융보안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감독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듦. 그래서 감독기준에서의 규정 같은 것도 보다 구체화하고 기준을 만드는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금융회사라든가 피해자간의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문제라든지, 무과실 책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이번에 이런 제재 건을 처리하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림.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의결안건 제24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8월5일 시행예정인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권에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을 도입하며, 금융권 정보보호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하는 내용
 - (위원) 언론에서는 데이터3법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하겠다고 법을 고쳤는데 막상 시행령에서 다 묶어버렸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사모펀드를 예를 들 때도 그럴 수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 의견수렴 과정에서 또 규개위 협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보고자) 시행령에서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어렵게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내용들이 었음. 규제개혁위원회 6월26일 심사를 통해서 대부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수정하여 의결되었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나 신용정보법 시행령 모두데이터 활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임. 그리고 정보활용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법을 위반할 때부터 활용 부분뿐만 아니라 상시평가제도라든가 동의서라든가 그리고 처벌규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매우 신경 써서 입안을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가치추구 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원) 시행령에서도 처벌규정 같은 것이 있는지? 허용은 하 되 개인신용정보를 악용하거나 그런 것은 처벌을 강화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만드는, 물론 패널티가 세다고 안 하 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했을 때 얻는 이익과 손실 을 비교했을 때 손실이 너무 크다면 주저할 테니까 그런 부 분이 잘 조화가 되는지, 이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는 하게 해 주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 는 것이 있었으면 함.
- (보고자) 법에서 징벌적 과징금이라든가 형벌기준을 매우 강화하였기 때문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세부적인 것이 있지만 형벌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이미 법에서 마련이 되었음.

- (위원) 사모펀드라든지 주식시장에서의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주되 미국 같은 경우에 잘못한 사람은 200년 실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 있는 것 같음. 우리는 아예 하지 말라고 규제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음. 우리가 말하는 개인신용정보라든지 자본시장에서의 범죄 부분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니까 또 걱정이 한편에서는 못하게 막았다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서는 너무 허용해줬다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혹시 법률적으로 이 과정에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 (참여자) 법체계가 아직은 양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부응할 만큼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 징벌적 과징금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음. 소비자보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는 적극 공감함.
- (위원) 천천히 하려니까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하려고 하니까 사건사고가 항상 있

으니까 만드는 입장에서는 양쪽 입장을 고려하다보니까 그렇게 푸념을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과 비교도 되는데, 이 법 취지에 따라서 개인정보라든지 신용정보를 잘 활용한다는 측면과 다른 한쪽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두 바퀴를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과징금도 전체 매출액의 3%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타법보다 더 많이 5배까지 올렸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45호 『ㅇㅇㅇ **지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이행지원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워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46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단순반복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검사·제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

- (위원) 과태료 위임의 상한을 자본시장법상 유사사례를 인용하여 5억원으로 두었는데, 자본시장과 기타 업권간에는 본 질적으로 과태료 금액의 크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음
- ㅇ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 보류함
- 3) 보고안건 심의
- □ 보고안건 제22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개정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1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38분 폐회)